

제7호

행정명령

행정명령 147.41호 또는 이와 관련된 사안을 조사하여 정당한 경우 기소하기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뉴욕주 헌법은 주지사에게 뉴욕의 법률이 성실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 따라,
본인은 헌법을 지지하고, 주지사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헌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엄숙히 선서했음에 따라,

2020년 12월 22일 뉴욕주 스루웨이 87번 주간도로 얼스터 카운티 구역에서 뉴욕주 경찰 순찰관 Christopher Baldner와 다른 사람의 차량 충돌 사건이 발생하여 상대방인 Monica Goods가 사망한 사건(“Goods 사건(Goods Incident)”)이 발생했음에 따라,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제147호 및 제147.41호에 의거하여 법무장관이 Goods 사건을 조사하고 만약 정당한 경우 연루된 경관을 기소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 따라,

법무장관이 Goods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순찰관 Baldner가 과거 두 건의 차량 충돌 사건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유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법무장관은 Goods 사건을 얼스터 카운티 대배심(Ulster County Grand Jury)에 송부하고 대배심으로 하여금 순찰관 Baldner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고려하도록 해야 함에 따라,

대배심에서 Goods 사건을 대변하는 것의 일환으로 법무장관이 주요 증거의 일부로 순찰관 Baldner이 연루된 이전의 두 사건에 관련자 두 명을 소환해야 함에 따라,

법무장관은 대배심에 두 건의 과거 사건과 관련하여 순찰관 Baldner에게 적절한 형사 처벌을 고려하도록 요청하고 만약 대배심이 순찰관 Baldner을 기소 여부를 투표에 붙일 경우, Goods 사건 관련 기소와 더불어 과거 사건에 대한 기소 권한을 부여해야 함에 따라,

모든 뉴욕주 경찰 구성원이 뉴욕주법을 준수하고 사법 경제를 위해 근무하도록 보장해야 함에 따라,

전술한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형사 정의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확보해야 하며, 얼스터 카운티 지방검사의 반대 없이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얼스터 카운티 지방검사의 관할권 내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처리, 해석, 기소, 또는 조사를 실시할 권한을 부여해야 함에 따라,

그러므로, 이제, 본인 KATHLEEN HOCHUL 뉴욕주 주지사는 뉴욕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특히 행정법 조항 63의 하위조항 2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이 명령에 의해서 법무장관(이하 “특별 검사”)에게 위증을 포함하여 거짓 증언 등 이와 관련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이와 연관된 것으로서, 누군가에 의해서 실제로 범해졌거나 범해졌다고 주장되는 일체의 불법적 행위 또는 미조치를 조사하고, 정당한 경우에 이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2017년 1월 26일 순찰 차량을 이용한 뉴욕주 순찰관 CHRISTOPHER BALDNER가 민간인이 운전하는 민간 차량과 뉴욕주 얼스터 카운티의 뉴욕주 스루웨이 87번 주간도로에서 충돌하는 사건 발생
- 2019년 9월 6일 순찰 차량을 이용한 뉴욕주 순찰관 CHRISTOPHER BALDNER가 민간인 두 명을 동승하고 민간인이 운전하는 민간 차량과 뉴욕주 얼스터 카운티의 뉴욕주 스루웨이 87번 주간도로에서 충돌하는 사건 발생

또한, 특별 검사는 이 명령의 목적을 위해서 행정법 조항 63의 하위조항 2 및 8에 명시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이러한 행위 또는 미조치를 조사하고, 정당한 경우 특정 사건에 관련된 인물을 기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소추권을 보유하고 행사하며, 특별 검사의 관할권은 행정법 조항 63의 하위조항 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얼스터 카운티 지방검사의 모든 권한 및 의무를 대체 및 대신한다.

또한, 위에 명시된 것으로서, 특별 검사는 (i) 얼스터 카운티에서 진행되거나, 이를 위해서 진행되는 카운티 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재판절차에 직접 참석하고, (ii) 일체의 절차, 조사 및 조회를 수행할 목적으로 위에 언급된 법원의 재판절차를 위해 소집된 대배심에 직접 출두하며, (iii) 명령에 명시한 모든 불법적 행위에 대한 또는 연관된 해당 대배심 및 기타 대배심 앞에서 이루어지거나 취해질 수 있는 일체의 형사적 조치 및 절차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 행정명령은 주지사가 변경, 정지 또는 종료시킬 때까지 지속된다.

2021년 10월 20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한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